

행정처분기준(제8조의15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(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)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사항 | 근거 법령 | 행정처분기준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1차 | 2차 | 3차 | 4차 |
| 가.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| 법 제8조의4 제6항 또는 제8항 | 조업 정지 10일 | 조업 정지 30일 | 조업 정지 60일 | 폐쇄 명령 |
| 나. 가목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| | 조업 정지 | 폐쇄 명령 | | |

비고: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.